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
조례안

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02
----------	-----

2017. 4. 28.(금)
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종규 의원 등 7명

나. 발의일자 : 2016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4월 20일

-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박종규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재난의 대비 및 구호활동과 다양한 보건의료 활동으로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, 이산가족 재회, 지역봉사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통해 인도주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및 소속 봉사회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 및 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.(안 제4조)
-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5조)

- 적십자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공로가 큰 단체·법인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조례안은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의 활동을 충청북도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첫째,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 및 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
 - 둘째, 충청북도에서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근거 마련
 - 셋째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등 제4조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
 - 넷째, 적십자사 활동이 우수한 단체, 법인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적십자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사료되며,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.

※ 참고로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402 호
의결 연월일	2016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	박종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6년 5월 31일

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박종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0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5월 31일

제 출 자 : 박종규, 임희무, 엄재창
김영주, 연철흙, 윤은희
최광옥

1. 제안이유

- 재난의 대비 및 구호활동과 다양한 보건의료 활동으로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, 이산가족 재회, 지역봉사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통해 인도주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및 소속 봉사회들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 및 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.
(안 제4조)
- 나.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5조)
- 다. 적십자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공로가 큰 단체·법인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6 - 27 호

라. 협의 : 행정국 자치행정과 검토

마. 비용추계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헌신·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및 소속 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대한적십자사(이하 “적십자사”라 한다)”란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를 말한다.
2. “소속 봉사회”란 적십자사 소속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충청북도지사협의회를 말한다.

제3조(도민의 책무) 충청북도 도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지원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활동지원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
2.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
3.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
4. 보건의료·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
5.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
6. 청소년 적십자 활동 등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사업
7. 적십자 봉사회원 모집 및 교육·훈련 사업

8. 이산가족 재회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

9.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 활동과 기부문화 확산 사업

10.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른 사업

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가 운영 및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해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.

제5조(공유재산의 무상 대부)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

제6조(보조금의 지급 등)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4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신청, 지급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포상) 도지사는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법인·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대한적십자사 조직법

제8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)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,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.

제22조(사업 재원의 조성)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23조(국유·공유 재산의 무상대부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·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(無償)으로 대부할 수 있다.